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합5778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윤승현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가)항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특허청 별지 목록 1 (나)항 기재 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는 394,912,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D는 원고에게 680,03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A과 체결한 보증약정에 따라 2012. 5. 31.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31.로 정한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위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5. 29.로 변경되었다.

나. 2017. 5. 13. A의 E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6. 8. E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7. 6. 29. 위 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170,950,789원을 변제하였다.

라. A은 2017. 1. 11. 피고 C에게 A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가)항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2017. 1. 19.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 D는 2017. 2. 3. A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보조참가인은 2017. 7. 20.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매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2017. 6. 22. 파산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2017하단100299)은 2017. 11. 17.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A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위 각 권리를 전부이전등록하여 주었는데,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원인의 각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A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위 등기 이후 근저당권의 변동이 있어 원물반환이 부적절하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갈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권리 매매 무렵 A은 소극재산으로 E은행에 대한 채무 3,452,006,667원 및 피고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무 660,000,000원 등 적어도 합계 4,112,006,66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각 권리 및 위 토지 및 건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과 A이

위 각 권리의 매매대금을 3,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1. 무렵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3,974,790,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권리 매매 당시 A의 적극재산은 합계 3,977,790,700원이 되고, 이는 위 소극재산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권리 매매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위 각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각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A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권리 매매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위 각 권리 매매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권리는 A이 생산하는 싱크대용 수도꼭지헤드 디자인권 등으로 A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었던 점, A은 위 각 권리 매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한 점, 피고 C은 2017. 3. 10. A의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각 권리 매매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의 부인권 행사로 위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원인인 위 각 권리 매매가 부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원인의 각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장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① 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거래 업체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 수입 물품의 불량 발생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대출금 및 물품대금 등 채무 변제를 연체하게 되었다.
- ② A은 2017. 1.경 피고 D로부터 물품대금 미수 채권이 많아져 더 이상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7. 2. 3. 피고 D의 A에 대한 660,000,000원의 외상매출금 채권 중

560,000,000원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A의 지분 1/2 상당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4개월여만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선의 주장

피고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는 주장

피고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A에게 660,000,000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어 A에게 이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고 A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정산 요청에 응하여 정산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A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피고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위 토지 및 건물은 A이 운영하는 공장 부지 및 건물로 A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A이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던 점, 피고 D는 A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늘어나 더 이상 A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정산 합의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고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한 것으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 1)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1,317,600,000원, 2,160,000,000원, 420,000,000원인 E은행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인 피고 D의 근저당권이 위 매매계약 직후 각 말소되고 새로 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등기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2) 가액배상의 범위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갈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의 2019. 5. 10. 무렵 시가가 4,241,831,200원인 사실, 2017. 2. 3. 무렵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E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3,452,006,667원인 사실(원고는 E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2,881,760,240원이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이고, 2017. 2. 3. 무렵 A의 E은행에 대한 채무가 합계 3,452,006,667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3,452,006,667원을 E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는 A과의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가액에 관하여 1/2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D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토지 및 건물에서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가액은 394,912,266원[(위 토지 및 건물 시가 4,241,831,200원 - 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452,006,667원) × A의 지분 비율 1/2]이라고 보아야 한다.

## 라. 결론

피고 D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394,912,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염원섭, 판사 구세희, 판사 유동균

## 목록 1

| 순번 | (가) 권리        | (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
| 1  | 특허권           | 2017. 1. 19. 접수 접수번호<br>[ ] |
|    | ① 특허번호        |                             |
|    | ② 출원번호        |                             |
|    | ③ 발명의명칭       |                             |
|    | ④ 최종권리자       |                             |
| 2  | 디자인권          | 2017. 1. 19. 접수 접수번호<br>[ ] |
|    | ① 디자인 등록번호    |                             |
|    | ② 출원번호        |                             |
|    | ③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                             |
|    | ④ 최종권리자       |                             |
| 3  | 디자인권          | 2017. 1. 19. 접수 접수번호<br>[ ] |
|    | ① 디자인 등록번호    |                             |
|    | ② 출원번호        |                             |
|    | ③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                             |
|    | ④ 최종권리자       |                             |
| 4  | 디자인권          | 2017. 1. 19. 접수 접수번호<br>[ ] |
|    | ① 디자인 등록번호    |                             |
|    | ② 출원번호        |                             |
|    | ③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                             |
|    | ④ 최종권리자       |                             |
| 5  | 디자인권          | 2017. 1. 19. 접수 접수번호<br>[ ] |
|    | ① 디자인 등록번호    |                             |
|    | ② 출원번호        |                             |
|    | ③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                             |
|    | ④ 최종권리자       |                             |

끝.

## 목록 2

1. 인천 계양구 G 대 1,289.3m<sup>2</sup>

2. 인천 계양구 G

[도로명주소] 인천 계양구 H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장

1층 729.74m<sup>2</sup>

2층 259.89m<sup>2</sup>

3층 796.94m<sup>2</sup>

4층 796.94m<sup>2</sup>

5층 796.94m<sup>2</sup>

6층 179.03m<sup>2</sup>

옥탑 1층 70.9m<sup>2</sup>, 끝.